

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
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10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맞춤형 인적자원 육성, 주민 주도의 통합지역개발 수립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전담기관 필요성이 증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운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구미시 농촌협약지원센터(중간지원조직) 사무(민간위탁)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(추진근거)

-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
-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(필요성)

- 2023년 “농촌협약” 공모를 위한 전제조건
- 전담기관으로 지정·운영하여 전문성 확보

다. 위탁사무 내용

○ 지역사회 역량강화 상시교육과정 운영

-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컨설팅
- 농촌주민, 현장활동가 등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교육프로그램

○ 지역사회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

-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/W사업지원
-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, 포럼,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

○ 지역사회 생활서비스 공급·전달 지원사업

-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및 농촌지역개발사업 기획, 이행지원
- 현장활동가가 다양한 생활서비스 공급, 전달과정에 참여프로그램 기획

라. 위탁기간 : 2022 ~ 2023(2년간), 재연장 가능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바. 소요예산 : 시군역량강화 예산 250백만원(2022년 기준)

관계법령

□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 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방법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□ 「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4조(센터의 운영 등)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센터를 선량하게 운영하고, 센터의 전문적·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소 관 부 서		농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김종명
	담 당	임호규
	담 당 자	윤영경 (480-5792)